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16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19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디지털성범죄 발생 이후의‘사후 조치’지원 규정을 신설하면서,‘범죄 예방’과‘사후조치’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제17조 규정은 그대로 규정함(안 제14조5 및 제17조).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의5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한 제17조를 현행대로 둠.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»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»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</u> <u>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--</u> ----- ----- -----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 제3조(지원사업) ① (개정안과 같음)
	제14조의5(<u>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</u>) 시장은 <u>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u>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 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	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제17조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<u>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<삭 제></u>	<u><신 설></u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.